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	-----

제출년월일 : 2016.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유도시 성북’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구립도서관에서 주민에게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도서관 시설 및 물품 사용료”로 개정(안 제3조, 안 제8조)
- 나. 시설의 위탁운영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 신설(안 제5조제5항)
- 다. 사용료·수강료 반환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교습비의 반환기준)를 준용하여 정비(안 제10조)
- 라.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물품(공구) 사용료 금액 규정(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상세별첨)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 2016. 3. 17. ~ 2016. 4. 6., 제출의견 없음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시설을 이용하는”을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성북구”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북구”를 “구”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성북구”를 “구”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에서 “성북구”를 “구”라고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개시 7일 전까지”를 “수강 개시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시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을 “개시 후 3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로, “100분의 10을 공제한”을 “3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시일 이후”를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까지”로, “100분의 10과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강이 개시되어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별표 2의 개인연구실란 다음에 물품(공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품(공구)	가격 5만원 미만	500원	
	가격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000원	
	가격 10만원 이상	2,000원	

별표 2의 물품(공구)란 다음에 “※ 물품 파손·분실 및 미반환시 동일 물품으로 변상”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른 <u>도서관의</u>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종류 및 명칭) ----- --- <u>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u> 도서관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사용료</u>"란 <u>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u></p> <p>5. ~ 7. (생략)</p>	<p>제3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용료</u>"란 <u>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p> <p><u>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p>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 ----- <u>시설 및 물품을 이용하는</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1. (생략)

2.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수강 개시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4. 수강 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분의 10과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수강 개시 -----

3. ----- 개시 후 3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
-- 3분의 2 -----

4. -----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까지 ----- 2분의 1 -----

5. 수강이 개시되어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일부 개정에 따른
사용료 대상 확대로 재단수입 일부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수입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장 순 봉